

(앞 쪽)

제 호
검 사 관 증
사 진 3cm × 4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성 명
기 관 명

60mm × 90mm 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(색상: 연노랑)

(뒤 쪽)

검 사 관 증
소속/직급:
성 명:
생년월일:
위 사람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
기 관 장 명 의 직인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 2.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·수거·검사·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 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